

강릉 더리브 퍼스티지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정정공고]



입주자모집공고 정정 안내

※ 2022.09.16.(금) 일자로 공고한 '강릉 더리브 퍼스티지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사항이 있어 공고합니다.

■ 변경전(발코니확장)

[단위: 원, 부가세포함]

구 분	112A	112B	130	148	180P	195P	비고
발코니확장 공사금액	35,200,000	35,200,000	39,600,000	46,200,000	55,000,000	59,400,000	
계약금(10%-계약시)	3,520,000	3,520,000	3,960,000	4,620,000	5,500,000	5,940,000	
잔 금(90%-입주시)	28,480,000	28,480,000	32,040,000	37,380,000	44,500,000	48,060,000	

■ 변경후(발코니확장)

[단위: 원, 부가세포함]

구 분	112A	112B	130	148	180P	195P	비고
발코니확장 공사금액	35,200,000	35,200,000	39,600,000	46,200,000	55,000,000	59,400,000	
계약금(10%-계약시)	3,520,000	3,520,000	3,960,000	4,620,000	5,500,000	5,940,000	
잔 금(90%-입주시)	31,680,000	31,680,000	35,640,000	41,580,000	49,500,000	53,460,00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강릉 더리브 퍼스티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방문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www.강릉더리브퍼스티지.com>)를 통해 분양일정 및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견본주택 방문시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전 열화상 카메라 또는 체온계 측정을 통한 체온이 37.3도가 넘는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
- 기타 사업주체 등이 요구한 사항에 불응할 경우

2.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은 견본주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입장 인원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일정은 당첨자 발표 이후 개별 통보 및 예약 예정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강릉 더리브 퍼스티지 고객센터(1600-1311)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시간의 전화상담요청 등으로 통화의 지연 및 대기,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필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등)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및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개정 시행된 내용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 09. 16.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강원도 강릉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09. 16.)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인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강릉시 고시」 제340호에 의거하여 주택건설지역인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거주자(2022.03.16.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우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우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정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점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등·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정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8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강릉더리브퍼스티지.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8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8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없음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에 위한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제3호)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기간	계약체결
일 정	09월 26일(월)	09월 27일(화)	09월 28일(수)	10월 05일(수)	10월 06일(목) ~ 10월 15일(토)	10월 17일(월) ~ 10월 19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건본주택방문 (10:00 ~ 17:00)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건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p>건본주택 (강릉시 지번동 360-6)</p>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바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기관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다른 필요한 분양서류 일체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 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임으로 분양계약(전매포함)체결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질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주세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 등기(최고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고나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강릉시 주택과 - 제25088호(2022. 09. 0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강원도 강릉시 지변동 67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5층 2개동 총 17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특별공급 22세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7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4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계		
인명 주택	2022000599	01	112.2643A	112A	112.2643	28.0100	140.2743	83.7957	224.0700	60.6288	21	2	1	3	18	2
		02	112.2994B	112B	112.2994	27.5788	139.8782	83.8219	223.7002	60.6477	39	4	1	5	34	2
		03	130.0236	130	130.0236	30.6586	160.6822	97.0516	257.7337	70.2198	105	11	3	14	91	6
		04	148.8292	148	148.8292	34.1877	183.0169	111.0884	294.1052	80.3758	6	-	-	-	6	-
		05	180.8676	180P	180.8676	46.1800	227.0476	135.0023	362.0498	97.6783	3	-	-	-	3	-
		06	195.0026	195P	195.0026	47.7795	242.7821	145.5528	388.3350	105.3119	2	-	-	-	2	-
	합 계											176	17	5	22	154

- ※ 주택형의 구분은 광고상의 표기이며, 건물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전용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 건물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천의 방법으로 우선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단위: 원, 부가세포함]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별 라인별	층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금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1주일 內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2022.12.05	2023.04.05	2023.08.05	2024.01.05	2024.05.05	2024.09.05	입주지정일
112A	21	101동(6호)	2층	1	127,960,000	389,400,000	38,940,000	556,300,000	20,000,000	35,630,000	55,630,000	55,630,000	55,630,000	55,630,000	55,630,000	55,630,000	166,890,000
			3층	1	132,880,000	404,200,000	40,420,000	577,500,000	20,000,000	37,750,000	57,750,000	57,750,000	57,750,000	57,750,000	57,750,000	57,750,000	173,250,000
			4층	1	138,690,000	422,100,000	42,210,000	603,000,000	20,000,000	4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180,900,000
			5~8층	4	144,620,000	439,800,000	43,980,000	628,400,000	20,000,000	42,840,000	62,840,000	62,840,000	62,840,000	62,840,000	62,840,000	62,840,000	188,520,000
		102동(4호)	2층	1	126,060,000	383,400,000	38,340,000	547,800,000	20,000,000	34,780,000	54,780,000	54,780,000	54,780,000	54,780,000	54,780,000	54,780,000	164,340,000
			3층	1	129,970,000	395,300,000	39,530,000	564,800,000	20,000,000	36,480,000	56,480,000	56,480,000	56,480,000	56,480,000	56,480,000	56,480,000	169,440,000
			4층	1	135,790,000	413,100,000	41,310,000	590,200,000	20,000,000	39,020,000	59,020,000	59,020,000	59,020,000	59,020,000	59,020,000	59,020,000	177,060,000
			5~10층	6	141,710,000	430,900,000	43,090,000	615,700,000	20,000,000	41,570,000	61,570,000	61,570,000	61,570,000	61,570,000	61,570,000	61,570,000	184,710,000
		11~15층	5	144,620,000	439,800,000	43,980,000	628,400,000	20,000,000	42,840,000	62,840,000	62,840,000	62,840,000	62,840,000	62,840,000	188,520,000		
112B	39	101동(3호)	2층	1	122,750,000	373,500,000	37,350,000	533,600,000	20,000,000	33,360,000	53,360,000	53,360,000	53,360,000	53,360,000	53,360,000	160,080,000	

130	105	102동(2호)	3층	1	126,670,000	385,300,000	38,530,000	550,500,000	20,000,000	35,050,000	55,050,000	55,050,000	55,050,000	55,050,000	55,050,000	55,050,000	165,150,000		
			4층	1	132,490,000	403,100,000	40,310,000	575,900,000	20,000,000	37,590,000	57,590,000	57,590,000	57,590,000	57,590,000	57,590,000	57,590,000	57,590,000	172,770,000	
			5~10층	6	137,410,000	417,900,000	41,790,000	597,100,000	20,000,000	39,710,000	59,710,000	59,710,000	59,710,000	59,710,000	59,710,000	59,710,000	59,710,000	179,130,000	
			11~20층	10	141,220,000	429,800,000	42,980,000	614,000,000	20,000,000	4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184,200,000	
			21~22층	2	145,140,000	441,600,000	44,160,000	630,900,000	20,000,000	43,090,000	63,090,000	63,090,000	63,090,000	63,090,000	63,090,000	63,090,000	63,090,000	189,200,000	
			2층	1	122,750,000	373,500,000	37,350,000	533,600,000	20,000,000	33,360,000	53,360,000	53,360,000	53,360,000	53,360,000	53,360,000	53,360,000	53,360,000	160,080,000	
			3층	1	126,670,000	385,300,000	38,530,000	550,500,000	20,000,000	35,050,000	55,050,000	55,050,000	55,050,000	55,050,000	55,050,000	55,050,000	55,050,000	165,150,000	
			4층	1	132,490,000	403,100,000	40,310,000	575,900,000	20,000,000	37,590,000	57,590,000	57,590,000	57,590,000	57,590,000	57,590,000	57,590,000	57,590,000	172,770,000	
			5~10층	6	137,410,000	417,900,000	41,790,000	597,100,000	20,000,000	39,710,000	59,710,000	59,710,000	59,710,000	59,710,000	59,710,000	59,710,000	59,710,000	179,130,000	
		11~19층	9	141,220,000	429,800,000	42,980,000	614,000,000	20,000,000	4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184,200,000		
		101동(1호)	2층	1	139,320,000	423,800,000	42,380,000	605,500,000	20,000,000	40,550,000	60,550,000	60,550,000	60,550,000	60,550,000	60,550,000	60,550,000	60,550,000	181,650,000	
			3층	1	143,750,000	437,500,000	43,750,000	625,000,000	20,000,000	4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187,500,000	
			4층	1	149,350,000	454,500,000	45,450,000	649,300,000	20,000,000	44,930,000	64,930,000	64,930,000	64,930,000	64,930,000	64,930,000	64,930,000	64,930,000	194,790,000	
			5~10층	6	156,110,000	474,900,000	47,490,000	678,500,000	20,000,000	47,850,000	67,850,000	67,850,000	67,850,000	67,850,000	67,850,000	67,850,000	67,850,000	203,550,000	
			11~20층	10	159,390,000	485,100,000	48,510,000	693,000,000	20,000,000	4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207,900,000	
			21~25층	5	165,090,000	502,100,000	50,210,000	717,400,000	20,000,000	51,740,000	71,740,000	71,740,000	71,740,000	71,740,000	71,740,000	71,740,000	71,740,000	215,220,000	
			101동(2호) 102동(1호)	2층	2	141,530,000	430,700,000	43,070,000	615,300,000	20,000,000	41,530,000	61,530,000	61,530,000	61,530,000	61,530,000	61,530,000	61,530,000	61,530,000	184,590,000
				3층	2	146,080,000	444,200,000	44,420,000	634,700,000	20,000,000	43,470,000	63,470,000	63,470,000	63,470,000	63,470,000	63,470,000	63,470,000	63,470,000	190,410,000
4층	2			152,730,000	464,700,000	46,470,000	663,900,000	20,000,000	46,390,000	66,390,000	66,390,000	66,390,000	66,390,000	66,390,000	66,390,000	66,390,000	199,170,000		
5~10층	12	159,390,000		485,100,000	48,510,000	693,000,000	20,000,000	4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207,900,000			
102동(1호)	11~18층	8	162,770,000	495,300,000	49,530,000	707,600,000	20,000,000	50,760,000	70,760,000	70,760,000	70,760,000	70,760,000	70,760,000	70,760,000	70,760,000	212,280,000			
101동(2호)	11~20층	10	162,770,000	495,300,000	49,530,000	707,600,000	20,000,000	50,760,000	70,760,000	70,760,000	70,760,000	70,760,000	70,760,000	70,760,000	70,760,000	212,280,000			
	21~22층	2	168,370,000	512,300,000	51,230,000	731,900,000	20,000,000	53,190,000	73,190,000	73,190,000	73,190,000	73,190,000	73,190,000	73,190,000	73,190,000	219,570,000			
101동(4호,5호) 102동(3호)	2층	3	144,910,000	440,900,000	44,090,000	629,900,000	20,000,000	42,990,000	62,990,000	62,990,000	62,990,000	62,990,000	62,990,000	62,990,000	62,990,000	188,970,000			
	3층	3	149,350,000	454,500,000	45,450,000	649,300,000	20,000,000	44,930,000	64,930,000	64,930,000	64,930,000	64,930,000	64,930,000	64,930,000	64,930,000	194,790,000			
	4층	3	156,110,000	474,900,000	47,490,000	678,500,000	20,000,000	47,850,000	67,850,000	67,850,000	67,850,000	67,850,000	67,850,000	67,850,000	67,850,000	203,550,000			
	5~10층	18	162,770,000	495,300,000	49,530,000	707,600,000	20,000,000	50,760,000	70,760,000	70,760,000	70,760,000	70,760,000	70,760,000	70,760,000	70,760,000	212,280,000			
101동(4호)	11~18층	8	166,150,000	505,500,000	50,550,000	722,200,000	20,000,000	52,220,000	72,220,000	72,220,000	72,220,000	72,220,000	72,220,000	72,220,000	72,220,000	216,660,000			
101동(5호)	11~13층	3	166,150,000	505,500,000	50,550,000	722,200,000	20,000,000	52,220,000	72,220,000	72,220,000	72,220,000	72,220,000	72,220,000	72,220,000	72,220,000	216,660,000			
102동(3호)	11~15층	5	166,150,000	505,500,000	50,550,000	722,200,000	20,000,000	52,220,000	72,220,000	72,220,000	72,220,000	72,220,000	72,220,000	72,220,000	72,220,000	216,660,000			
148	6	101동(1호)	1층	1	151,730,000	461,700,000	46,170,000	659,600,000	20,000,000	45,960,000	65,960,000	65,960,000	65,960,000	65,960,000	65,960,000	65,960,000	197,880,000		
		101동(2호) 102동(1호)	1층	2	155,570,000	473,300,000	47,330,000	676,200,000	20,000,000	47,620,000	67,620,000	67,620,000	67,620,000	67,620,000	67,620,000	67,620,000	202,860,000		
		101동(4호,5호) 102동(3호)	1층	3	158,090,000	481,100,000	48,110,000	687,300,000	20,000,000	48,730,000	68,730,000	68,730,000	68,730,000	68,730,000	68,730,000	68,730,000	206,190,000		
180	3	101동(2호)	23층	1	267,420,000	813,800,000	81,380,000	1,162,600,000	40,000,000	76,260,000	116,260,000	116,260,000	116,260,000	116,260,000	116,260,000	116,260,000	348,780,000		
			24층	1	273,170,000	831,300,000	83,130,000	1,187,600,000	40,000,000	78,760,000	118,760,000	118,760,000	118,760,000	118,760,000	118,760,000	118,760,000	356,280,000		
			25층	1	278,920,000	848,800,000	84,880,000	1,212,600,000	40,000,000	81,260,000	121,260,000	121,260,000	121,260,000	121,260,000	121,260,000	121,260,000	363,780,000		
195	2	102동(3호)	16층	1	276,230,000	840,700,000	84,070,000	1,201,000,000	40,000,000	80,100,000	120,100,000	120,100,000	120,100,000	120,100,000	120,100,000	120,100,000	360,300,000		
			17층	1	287,730,000	875,700,000	87,570,000	1,251,000,000	40,000,000	85,100,000	125,100,000	125,100,000	125,100,000	125,100,000	125,100,000	125,100,000	375,300,000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층별, 향별, 동간선별, 특화설계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면적합산시 소수점 5자리에서 단소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계약금(공급금액의 10%)은 계약시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할 경우 지정계약 기간 내 1차 계약금 납부 후 7일 내 2차 잔여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차 잔여계약금의 납부지연 및 미납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별도의 고지 없이 판매할 수 있고 판매시 예비입주자, 무순위 신청자 순으로 먼저 배정하며 이후 사업주체가 임의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공급금액의 10%)을 납부하거나 1차, 2차 계약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계약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회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비용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출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설계 등 인허가 변경, 측량 및 지적 정리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또는 소수점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단수조정 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총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입니다.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고,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시기는 공급계약서에 따라 정합니다.
 - 가. 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 나. 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중도금은 시행위탁자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 금융기관으로 대출신청(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은 계약 체결 후 계약자 본인이 하여야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 대출규제 대상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차원의 아파트 중도금대출(집단대출) 심사강화로 인한 대출은행 미선정 등의 사유로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잔여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최저층 우선배정세대는 총 10세대로 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신청자 및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서류는 서류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칭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락하는 경우 분양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주체가 본 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칭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분양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112A	112B	130	합 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	4	11	1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1	3	5
합 계	3	5	14	2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유의사항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은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방문접수(건본주택)도 가능합니다.
- 입주선정 결과는 개별통지 하지 않고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시점에 동시 발표하며,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 처리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등)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강릉시 및 강원도)</th> <th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style="text-align: center;">그 밖의 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102㎡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13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모든면적</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강릉시 및 강원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강릉시 및 강원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이혼자녀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함.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강원도)에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5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정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시 강릉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도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 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강원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점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 전 반드시 '청약Home'에서 청약제한사항 조회 요망.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확인)

- 층별, 동별, 호별 등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8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 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①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②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③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 신청한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점수와 비교하여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85㎡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강릉시 및 강원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2022.09.26(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건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일반공급	1순위	2022.09.27.(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본주택(강릉시 지변동 360-6번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2순위	2022.09.28(수)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발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8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8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 6개월 이상 거주신청자가 강릉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8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8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8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

	<p>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p>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 제출	계약체결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2.10.05.(수)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2.10.06.(목)~2022.10.15.(토) (10:00~17:00) • 장소 : 견본주택 (강릉시 지변동 360-6번지)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 시간은 상이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2.10.17.(월)~2022.10.19.(수) (10:00~16:00) • 장소 - 견본주택 (장소 : 강릉시 지변동 360-6번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치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치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 ※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 등에 따라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되고 부적격자로 관리됩니다.
-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은 불가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강릉더리퍼스트지.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쏠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10.05 (수) ~ 2022.10.14 (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10.05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 체결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 체결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공급 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당사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대상	서류제출 기간	제출장소	유의사항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10.06.(목)~2022.10.15.(토) (10일간, 10:00~17:00) • 특별공급 당첨자 : 특별공급 서류 및 계약체결 서류 지참 • 1,2순위 : 계약체결 서류 지참 ※ 당첨자 검수일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원활한 계약체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검수 점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당첨자 검수일은 정당계약일 이후 추후 공지예정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서류 제출방법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제출방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견본주택 (강릉시 지변동 360-6번지)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인터넷 청약시는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기간 내 접수완료 하여야 함. 정보취약계층은 견본주택 내 특별공급청약 접수시 제출완료 하여야 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공동서류 (예비입주자 포함)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에 비치 ※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본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청약(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철거주택소유자 신청자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군 복무기간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가 분리되어있는 경우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공급 받으려는 자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장기체류 여부 체크, 1순위 자격요건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확인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정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자녀	• 재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자녀	• 본인 : 만19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자녀 : 만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건본주택 비치)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노부모부양 자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자녀	• 본인 : 만30세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자녀 : 만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인신분증,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서류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Ⅶ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기간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2.10.17.(월)~2022.10.19.(수) (3일간, 10:00~16:00)	강릉 더리브 퍼스티지 건본주택 (강릉시 지변동 360-6번지) ※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본인계약시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자격검증서류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인강증명서	본인	•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발급에 한함. 본인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 접수 불가) 로 대체 가능
	○	인강도장	본인	• 인강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계약금입금증	-	•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	인강증명서	본인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인강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계약자의 인강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장소 비치)
	○	위임장	-	
○	대리인신분증	대리인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강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계약 체결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며(사본 불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공고일 이후에 청약신청자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 당시의 구비서류도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수협은행	1010-2193-3971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 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건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본주택에서 현금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단,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이자후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분양대금 중 중도금 납부금액의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은행에서 중도금대출시 이자후불 조건으로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이자 및 보증수수료는 대출개시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최초 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며, 최초 입주개시일로부터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단 계약자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한 대출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입주지정 기간 내 입주시점까지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 한도초과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담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 및 건보주택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을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시 유의사항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청약이 제한됨)
 - 청약가점항목(우주택기간, 분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청약가점항목(우주택기간, 분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우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 기간 내 입주시에는 입주증발급일 또는 키 수령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의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봅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미납부 및 기타 행정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 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급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추가사항(본인 외 모두 제3자로간주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기간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1년, 수도권외의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통지한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일시에 불참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 지위를 인정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1조 제3항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예정 개시일 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별도통보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4년 12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부대 ·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휘트니스센터, 게스트하우스 등

※ 부대 및 복리시설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상기 계획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Ⅷ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단위: 원, 부가세포함]

구 분	112A	112B	130	148	180P	195P	비고
발코니확장 공사금액	35,200,000	35,200,000	39,600,000	46,200,000	55,000,000	59,400,000	
계약금(10%)~계약시	3,520,000	3,520,000	3,960,000	4,620,000	5,500,000	5,940,000	
잔 금(90%)~입주시	31,680,000	31,680,000	35,640,000	41,580,000	49,500,000	53,460,000	

■ 발코니 확장 비용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수협은행	1010-2246-5472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발코니 확장 대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건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101동 1001호 홍길동→'1011001홍길동'. (단,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경과 후 사업주체에 환불신청서를 제출시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와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이체 바라며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착오 입금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추가선택품목의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세부 사항은 건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호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전기오븐, 드레스룸(가구도어 + 시스템가구(화장대 포함)), 비데(욕실2), 전동빨래건조대, 팬트리 가구도어 포함됩니다.(비확장 선택시 미포함)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별도로 통지하는 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에서 통지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건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제시된 창호(유리, 프레임)의 강도는 본 공사 시 층수 및 위치에 따라 바람에 의한 영향의 차이로 인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른 추가 단열공사 시 비확장 세대측에 우선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며, 이로 인하여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및 실내 공간 등 일부 구간의 바닥, 벽체, 천장 일부가 돌출, 단차, 높이 및 폭 축소, 결로 등이 발생되거나 발생할 수 있어 내부 공간 축소 등 사용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당 세대와 상·하부층 및 인접 세대의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및 실내 공간 등 일부 구간의 바닥, 벽체, 천장 일부가 돌출, 단차, 높이 및 폭 축소, 결로 등이 발생되거나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내부 공간 축소 등 사용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당 세대와 상·하부층 및 인접 세대의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은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여부에 따라 바닥, 벽체 및 천장 등에 단열재가 설치되어 사용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로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상·하부층 및 인접 세대의 발코니 확장 시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비확장 세대 내부 바닥, 벽체 및 천장 등에 단열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발코니 및 실내 공간 등 일부 구간의 바닥, 벽체 및 천장의 마감면의 돌출 및 단차발생, 결로발생, 천장고 높이 감소, 커튼박스 및 등박스 크기 및 깊이 감소, 설비 설치 불가 등이 발생되거나 발생할 수 있어 사용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하부층 및 인접 세대의 발코니 비확장 시 불가피하게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세대 내부 바닥, 벽체 및 천장 등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코니 및 실내 공간 등 일부 구간의 바닥, 벽체 및 천장의 마감면의 돌출 및 단차발생, 결로발생, 천장고 높이 감소, 커튼박스 및 등박스 크기 및 깊이 감소, 설비 설치 불가 등이 발생되거나 발생할 수 있어 사용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부층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배수를 위한 배수관이 하부층 세대 천장 속 또는 벽면 등에 설치되거나, 외부에 배수를 위한 선홍통이 설치되어 소음, 누수 등의 하자발생 및 외부 미관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 대피공간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관계법령에 따른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발코니 사시 설치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에 렌지후드 및 화장실용 환 덕트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마감이 불량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 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내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2A/B, 130, 148 type 침실1 발코니, 195Ptype 침실5 발코니에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됩니다. 단 해당 발코니를 제외하고 별도의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180Ptype 발코니1, 발코니2 배수설비설치(수전미설치), 195Ptype 발코니 2, 3번: 배수설비 설치(수전 미설치))
- 기본형세대(비확장형 세대) 선택시 냉매배관, 드레인,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개별 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품목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부가세포함]

타입	옵션	실내기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112A	선택 ①	3대	5,720,000	572,000	5,148,000	
	선택 ②	6대	9,460,000	946,000	8,514,000	
112B	선택 ①	3대	5,720,000	572,000	5,148,000	
	선택 ②	5대	8,250,000	825,000	7,425,000	
130	선택 ①	3대	5,720,000	572,000	5,148,000	
	선택 ②	6대	9,460,000	946,000	8,514,000	
148	선택 ①	3대	5,720,000	572,000	5,148,000	
	선택 ②	6대	9,460,000	946,000	8,514,000	
180P	선택 ①	3대	6,380,000	638,000	5,742,000	
	선택 ②	7대	11,990,000	1,199,000	10,791,000	
195P	선택 ①	3대	6,380,000	638,000	5,742,000	
	선택 ②	9대	14,080,000	1,408,000	12,672,000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에만 시스템에어컨 설치가 가능하고, 발코니확장 미선택시 시스템에어컨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금액은 유상옵션 미선택시 적용되는 기본 냉매배관 2개소(거실, 안방)의 공사비를 차감하고 산정한 금액이며,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시 기본 매립 냉매배관(거실+안방)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에어컨 개별설치 시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에어컨 개별 설치시 실외기실의 공간이 협소하므로 별도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게 제품이 설치됩니다.
- 선택형에 따라 실이 통합되는 경우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개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시스템에어컨은 [LG전자]제품으로 시공됩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델과 브랜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실내기 및 판별의 경우 입주시점 신형모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80Ptype, 195Ptype의 경우 옵션선택에 따라 추가로 발코니에 실외기가 설치됩니다.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 등 유상 선택품목

[단위: 원, 부가세포함]

타 입	품 목	기본형	유상옵선행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 고
					계약금 10% (계약시)	잔금 90% (입주지정기간내)	
112A	현관중문/ 알파룸(침실형)	-	현관 3연동 슬라이딩도어+ 알파룸(침실형)	1,452,000	145,200	1,306,800	
	주방 특화	주방벽(타일(300x600))+주방가구(냉 장고장+김치냉장고+가구FIX판넬+드 자주방+소형코너장)+주방조명(우물 천장 미적용+팬던트 식탁등)+가전(3구 가스쿡탑)	주방벽(엔지니어드스톤)+주방가구(냉 장고장+김치냉장고+가구FIX판넬+가 구TL장1개소+장식장+독립형 아일랜드)+주방조명(우물천장+조명 레일형 등기구)+가전(3구 인덕션+LG전자 오브제 식기세척기+LG전자 오브제 컨버터블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15,510,000	1,551,000	13,959,000	
	다용도실 특화	다용도실(일반가구 도어+ 시스템가구+복도(실크벽지))	다용도실(슬라이딩도어+복도(FIX판넬))+다용도실 일반가구)+가전(LG위스타워 세탁기24kg+건조기20kg)	8,400,000	840,000	7,560,000	
	드레스룸 특화/ 욕실2 바디드라이어	드레스룸(일반가구 도어+ 시스템가구)+ 욕실2(조명일체형 욕실헨)	슬라이딩도어+드레스룸 일반가구장)+가전(LG오브제 의류관리기(5벌)+힘펠-휴젬트)	8,120,000	812,000	7,308,000	
112B	현관중문/ 복도팬트리	-	현관 3연동 슬라이딩도어+ 복도팬트리(가구도어+시스템가구)	2,670,000	267,000	2,403,000	
	주방 특화	주방벽(타일(300x600))+주방가구(냉 장고장+김치냉장고+가구FIX판넬+드 자주방+소형코너장)+주방조명(우물 천장 미적용+팬던트 식탁등)+가전(3구 가스쿡탑)	주방벽(엔지니어드스톤)+주방가구(냉 장고장+김치냉장고+가구FIX판넬+가 구TL장1개소+장식장+독립형 아일랜드)+주방조명(우물천장+조명 레일형 등기구)+가전(3구 인덕션+LG전자 오브제 식기세척기+LG전자 오브제 컨버터블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15,510,000	1,551,000	13,959,000	
	다용도실 특화	다용도실(일반가구 도어+시스템가구+복도(실크벽지))	다용도실(슬라이딩도어+복도(FIX판넬))+다용도실 일반가구)+가전(LG위스타워 세탁기24kg+건조기20kg)	8,400,000	840,000	7,560,000	
	드레스룸 특화/ 욕실2 바디드라이어	드레스룸(일반가구 도어+ 시스템가구)+ 욕실2(조명일체형 욕실헨)	슬라이딩도어+드레스룸 일반가구장)+가전(LG오브제 의류관리기(5벌)+힘펠-휴젬트)	8,120,000	812,000	7,308,000	
130/ 148	현관중문/ 복도수납/ 욕실2 바디드라이어	현관팬트리 확장형+ 욕실2(조명일체형 욕실헨)	현관 3연동 슬라이딩도어+ 복도장+가전(LG오브제 의류관리기(5벌)+힘펠-휴젬트)	5,370,000	537,000	4,833,000	

타 입	품 목	기본형	유상옵션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 고
					계약금 10% (계약시)	잔금 90% (입주지정기간내)	
	아트월 연장/ 주방 특화	주방벽 아트월면 (실크벽지)+주방벽(타일(300x600))+ 주방가구(냉장고장+김치냉장고+가구 FIX판넬+가구TL장2개소+ㄷ자주방+ 수납장)+주방조명(우물천장 미적용+팬던트 식탁등)+가전(3구 가스쿡탑)	아트월 간접조명(TV면)+ 주방벽 아트월 확장 시공(타일1200x600)+주방벽(엔지니 어드스톤)+주방가구(냉장고장+김치 냉장고+가구FIX판넬+가구TL장2개소 +히든주방+장식장+슬라이딩도어+독 립형 아일랜드)+주방조명(우물천장+조명 레일형 등기구)+가전(3구 인덕션+LG전자 오브제 식기세척기+LG전자 오브제 컨버터블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18,830,000	1,883,000	16,947,000	
	드레스룸 특화/ 알파룸(수납형)	드레스룸(일반가구 도어+시스템가구+실크벽지)+ 알파룸(목창호도어)	드레스룸(유리 슬라이딩도어+드레스룸 일반가구장)+알파룸(슬라이딩도어+ 시스템가구)	10,170,000	1,017,000	9,153,000	
	다용도실 특화/ 수납특화 (침실2, 3)	다용도실(일반가구 도어+시스템가구+복도(실크벽지))+ 침실2 불박이장	다용도실(슬라이딩도어+복도(FIX판넬))+다용도실 일반가구)+가전(LG 세탁기25kg+건조기20kg)+ 침실2,3 (매립형)불박이장	10,870,000	1,087,000	9,783,000	
	현관중문/ 복도수납/ 욕실3 바디드라이어	복도장+ 욕실2(조명일체형 욕실헨)	현관 3연동 슬라이딩도어+ 복도장(축소)+가전(LG오브제 의류관리기(5벌)+힘펠-휴젬트)	4,490,000	449,000	4,041,000	
180P	아트월 간접조명/ 주방 특화	주방벽(타일(300x600))+주방가구(냉 장고장+김치냉장고+가구FIX판넬+가 구TL장+ㄱ자주방+수납장)+주방조명(우물천장 미적용+팬던트 식탁등)+가전(3구 가스쿡탑)	아트월 간접조명(TV면)+ 주방벽(엔지니어드스톤)+주방가구(냉 장고장+김치냉장고+가구FIX판넬+가 구TL장2개소+히든주방+장식장+슬라 이딩도어+독립형 아일랜드)+주방조명(우물천장+조명 레일형 등기구)+가전(3구 인덕션+LG전자 오브제 식기세척기+LG전자 오브제 컨버터블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20,090,000	2,009,000	18,081,000	
	다용도실 특화	다용도실(시스템가구)	다용도실(다용도실 일반가구)+ 가전(LG 세탁기25kg+건조기20kg)	6,540,000	654,000	5,886,000	
195P	현관중문/ 복도수납/ 욕실3 바디드라이어	복도장+ 욕실2(조명일체형 욕실헨)	현관 3연동 슬라이딩도어+ 복도장(축소)+가전(LG오브제 의류관리기(5벌)+힘펠-휴젬트)	4,490,000	449,000	4,041,000	

타 입	품 목	기본형	유상옵선행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 고
					계약금 10% (계약시)	잔금 90% (입주지정기간내)	
	아트월 간접조명/ 주방 특화	주방벽(타일(300x600))+주방가구(냉장고장+김치냉장고+가구FIX판넬+가구TL장+ㄱ자주방+수납장)+주방조명(우물천장 미적용+팬던트 식탁등)+가전(3구 가스쿡탑)	아트월 간접조명(TV면)+주방벽(엔지니어드스톤)+주방가구(냉장고장+김치냉장고+가구FIX판넬+가구TL장2개소+히든주방+장식장+슬라이딩도어+독립형 아일랜드)+주방조명(우물천장+조명 레일형 등기구)+가전(3구 인덕션+LG전자 오브제 식기세척기+LG전자 오브제 컨버터블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20,090,000	2,009,000	18,081,000	
	다용도실 특화	다용도실(시스템가구)	다용도실(다용도실 일반가구)+가전(LG 세탁기25kg+건조기20kg)	6,680,000	668,000	6,012,000	

※ 유상옵선행 관련 유의사항

- 유상옵선행 패키지는 개별품목이 불가하며, 해당 패키지는 모집공고 내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주방가구 등의 가구 뒷면 및 바닥, 천정에는 바닥마감재 및 벽지, 천정지 등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시 연결 부위가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우물천장 및 유상옵선행 간접조명 부위는 설비 환기배관 및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로 인해 크기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유상옵선행은 분리하여 옵선행 선택이 안되며, 유상옵선행 미 선택시 조명기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유상옵선행 선택시에만 주방 서랍이 제공되며, 일부 타입은 유상옵선행 선택시 발췌 수납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시 각종가구 손잡이, 하드웨어, 레일, 악세서리 등의 디테일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 가구의 길이, 디자인, 위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조명기구 위치변경은 불가하며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선행 선택 시 설치되는 고급 슬라이딩 도어는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벽과 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선행 선택 시 설치되는 고급 슬라이딩 도어는 강화유리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주택형에 따라 크기가 다르게 시공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이 동질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벽과 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의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신청 시 주택형에 따라 디딤판의 크기, 디자인, 위치는 미선택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신청 시 주택형에 따라 벽체의 길이 또는 가구의 크기, 디자인, 위치는 미선택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벽과 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의 유리는 강화유리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 품목은 선택에 따라 미설치되는 기본제공 가전, 가구 등의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 설치 전 공급을 위한 매립호스가 설치되며, 이에 대한 시공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유상옵선행 선택 시 제공되는 가전은 타입에 따라 사양, 색상, 도어 개폐 방향, 설치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단, 추후(계약전 등)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안내할 경우 반드시 해당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계약시 아래 계좌 입금 후 입금증 주택전시관 제출[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통합옵션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에 준합니다.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기타품목)	신한은행	100-021-716311	에스지씨이테크건설(주)

■ 유의사항

- 옵션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 대금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공급금액은 선택에 따라 미설치되는 기본제공 가전, 가구, 마감재 등의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은 공동주택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 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은 본 공동주택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공동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귀책으로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총 옵션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은 본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 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 또는 전체)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확장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 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 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2)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창호	목재문(문틀, 문짝, 상부덧판, 문선), 창호철물일체(도어록, 경첩 등), 디지털도어록, 발코니 외부 PL창호	목재문(공틀문 포함)의 가틀(사춤 및 욕실문 하부씰 제외), 발코니 내부 PL창호(시트지 제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바닥재	바닥재(강마루, 현관바닥타일, 현관디딤판 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 바닥타일, 재료분리대 등(시멘트몰탈 포함)	바닥난방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세탁실 바닥방수, 화장실 방수, 발코니 우수선출통
벽	벽지(초배지 포함), 벽체 도장, 장식벽(벽지, 타일, 시트, 패널 등), 경량간막이(가변형 벽체 포함), 주방벽 타일, 픽스판넬 등 인테리어 마감	석고보드마감 또는 조적벽 미장마감 또는 콘크리트 면처리 마감 월패드, 도어폰, 전기 배관, 배선 및 배선기구(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콘센트, 스위치)류
천정	천장지(벽지류, 초배지 포함), 천장 도장,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천장틀+석고보드 마감, 소방시설(설비, 전기)
조명기구	부착형/거치형/가구등 등의 조명기구 일체	전기 배선, 배관 및 배선기구(콘센트, 스위치)류
욕실	천장재(천장틀 포함), 타일(바닥, 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욕조를 등), 샤워부스, 수전류(샤워수전 및 헤드 포함), 욕실 환풍기, 욕실장, 액세서리, 코킹, 재료분리대, 욕실폰, 비데, 바닥 배수구 커버(트렌치 포함)	조적, 방수, 미장, 설비배관, 전기 배관, 배선 및 배선기구(콘센트, 스위치)류
주방가구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각종 선반, 벽타일, 설비수전류, 주방TV폰, 주방가전, 일체(전기오븐, 렌지후드, 쿡탑, 음식물탈수기 등)	설비 배관
가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 드레스룸장(도어 및 선반 포함), 화장대(상판 및 거울 포함), 침실 붙박이장, 수납장, 각종 선반, 전동 빨래건조대, 보일러, 전열교환기, 각실 온도조절기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부가세포함, 단위 : 원]

구 분	112A	112B	130	148	180P	195P	비고
금액	566,400,000	558,400,000	646,400,000	631,500,000	1,104,500,000	1,140,200,000	

(4)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분양 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 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기 시공시설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함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쿡탑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가 설치할 경우 소방법에 의거 가스 또는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 주거용 자동소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은 잔금을 제외하고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잔금 납부 시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확장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의무사항 적용 여부)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 설치 조치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친환경 인증보일러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정열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따라 자동으로 정열되는 스위치설치	

■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모집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본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며, 소수점 5째 자리에서 절사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단수정리 등에 따른 오차면적은 일부 세대에 할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각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별도 경계구획 및 구분 등이 불가하여 이를 요구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및 준공 시 확정측량,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 면적,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증강이 있을 때에는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의 공용면적(계단실, 부대복리시설, 주차장, 단, 벽체공용면적은 제외)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합니다. • 각 면적 배분은 관련 법령 및 유사 법령의 기준으로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준공 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조건에 따라 사업부지 내 일부는 도로 확폭 및 차랑 진출입 가감속차로 사용 또는 기부채납되어 사업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사업면적은 도로 확폭 및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기부채납면적 366㎡을 제외한 실사용면적인 12,078㎡ 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중도금 대출,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당첨 및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분양안내, 유의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가 공급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공급계약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전국일간지에 분실공고를 내고 2주일 후 공증 받은 위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지참하고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 소정의 양식에 따른 분실각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 할 시에만 공급계약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단, 공급계약서 재발급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사업주체+계약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외국인이 상속·경매 등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위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취득세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기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및 공법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의 협의 및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분양대행사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대행사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의 결정에 따르며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변경시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사 중 일부 호실 또는 부대복리시설 전체 또는 일부는 현장사무실 및 창고, 샘플실 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 또는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공사도중) 전 세대내 무단출입 및 세대내부의 임의적인 촬영을 금지하며, 무단 촬영물의 유포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와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초등학생은 인근 경포초등학교로 배치 가능하며, 중학생은 강릉시 중학교군 내 배치 가능하나 일부 중학교는 지역 선배정 및 공동학구로 지정된 중학교이므로 학생배치를 위한 정밀분석이 진행되어야 하며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배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는 용도별로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의 타 시설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 계획(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등)은 추후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을 및 대지는 단지 내 타용도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단지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라인별 차이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상이하거나 침해당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상이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세대내. 외 및 공용부분(부대복리시설 포함)의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에서 분양을 진행하거나 완료한 공동주택의 마감사양, 설치된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형오시설 유무, 도로,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시설물 또는 타용도의 건물의 옥상 또는 인근에는 해당 시설의 실외기, 환기 및 배기팬 등의 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주동 및 세대는 노출,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세대는 시공 개선 및 품질 관리를 위한 현장 내 공사용 견본세대(목업)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측벽 등에 표기 또는 설치된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 품질 및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각 용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조경 및 공용시설에 장비 반입구, 한전소유의 전기설비 설치 공간(한전패드), 도시가스 관련 시설, 맨홀, 우수조, 실외기, 급배기구 및 쓰레기 수거장, 재활용 창고(분리수거 공간) 등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냄새, 진동, 소음, 해충, 사생활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지상 1층 외부공간은 조경시설 등으로 소음, 분진,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시 소음 측정으로 인해 인허가청과 협의 후 도로에 면한 면 또는 일부 방음벽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과정중 협의 결과에 따라 단지내부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빗물저류조가 단지주출입구 하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단지 외부 남측 교차로 하부에 우수배수용 집수정 및 펌프가 설치됨에 따른 분전반이 단지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서측 4m도로 구간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단지 외곽에 BY-PASS 구간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 등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주거단지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배치구조, 공동주택 동별, 향별, 층별, 라인별 위치에 따라 소음 발생, 일조 간섭, 조망 간섭, 전자파 발생, 전자기장애, 분진 발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또는 해당 민원으로 인한 행정관청의 공사중단, 권고 등으로 시공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조정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기관에 대해서는 지체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모집공고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생산일자, 생산공장(지)에 따라 이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표면결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옵션선택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전기, 통신 단자함 등의 설치위치 및 수량, 사양,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각종 기구(조명/배선기구/전기 통신함 등)의 설치위치 및 재질, 사양이 계약자에게 개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재 중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구 분	내 용
<p>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건본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나 본 시공 시 발코니 확장 및 확장 시 포함품목은 별도 계약사항으로 기본형태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 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한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제시된 창호(유리, 프레임)의 강도는 본 공사 시 층수 및 위치에 따라 바람에 의한 영향의 차이로 인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건본 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평면도, 사진 등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사업승인도서 또는 건축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확인 및 양지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건본 주택에 미건립된 세대의 경우 계약 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건본주택 건립세대와 다른 사항은 건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카탈로그 또는 모형 등을 확인 및 숙지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 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 또는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단지모형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등)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조명, 식재,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옥탑부 디자인, 주동/창호형태, 벽체마감, 디테일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게 설치됩니다.(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용 소방시 설임) • 건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연출용 설비 배관, 배선포함),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의 VR동영상은 건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건본주택의 전시품목 안내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사이버 건본주택 포함)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전한 뒤 입주 전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p>분양홍보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 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모형 및 카탈로그에 표현된 조감도, 투시도, 평면도, 배치도, 조명, 조경, 시설물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시공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자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및 건본주택에 표현된 단위세대 평면 등에 표현된 실의 규모 관련 치수 또는 면적 등은 제작 시에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건본주택에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공동주택동 및 부대복리동, 단지 등 외부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 주출입구에 설치되는 문주의 형태, 외벽의 줄눈 및 리브 등은 본 공사시 시공성 및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공동주택 외벽 색채는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주차장 출입경사로 상부의 캐노피의 설치여부 및 형태 등은 면적산정 등 인허가 사항과 본 공사시 시공성 및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미설치 또는 일부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홍보관 포함)에 설치된 배치도, 평면도 및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시 설치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으며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에 표현된 내용(부대시설, 드라이에어리어(DA), 한전패드,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레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DA, 한전패드, 조경 및 식재, 조명,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건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 완충녹지, 공원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유의사항

구 분	내 용
인허가 및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2022년 1월 12일 최초 건축심의완료(2021년 12월 26일 접수), 2022년 1월 21일 최초 사업계획승인완료(2021년 11월 09일 접수)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 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접수일 또는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 준공 전 또는 후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면적의 변경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의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들의 요청, 입면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가 동·호수별 등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각 용도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이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각 용도별 대지지분은 용도별 시설면적(계약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으며, 별도 경계구획 및 구분 등이 불가하여 이를 요구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타입 세대의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면적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유무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 등으로 본 공사 시 발코니 실사용 면적 등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사시 인허가 협의 결과 또는 현장 공사 여건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전용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사항은 수분양자의 동의 또는 고지를 진행 후 평면 및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조 및 성능 개선 등을 위해 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용면적 및 서비스면적, 내부구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분양자의 실제 공급면적(주거 공용면적, 계단실면적 등), 계약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대지지분 및 전용률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공용부 면적(계단실,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설비공간 등)은 본 공사시 현장 여건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설계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도로 및 조경선, 조경공사, 건물외벽 마감공사 등을 포함한 단지 공사,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인·허가 과정이나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각종 평가(소규모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한 내용 중 본 사업과 관련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 단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건축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 등은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여부 또는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구조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향후 구조형식과 구조부재의(기둥, 보 등) 크기, 위치, 개수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층고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계

		<p>변경 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여건에 따라 콘센트, 조명스위치 등의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분양가에 포함되는 항목(가구, 각종 등기구, 전자제품 등)은 개인적인 요구 및 취향에 따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발코니 확장여부에 따라 본 공사시 감지기,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창호 및 유리의 사양 및 크기, 개폐 방식, 개폐 방향, 브랜드, 하드웨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 디자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벽체에는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두께 및 현장여건에 따라 주동 저층부 외부 마감재(석재뿔칠 등) 적용 구간에 해당하는 세대의 창호사이즈는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도시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사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가스정압시설 및 전기변압시설 등의 시설물이 입주자 동의 없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은 건물 외부에 설치되며, 설치 계획에 따라 내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부대 복리 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의 구성 및 평면, 입면, 구조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 여건 및 사용성 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유효높이 확보를 위하여 일부 기둥, 보와 같은 구조체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용 D/A, 제연휀룸 D/A, 재활용품보관소 등의 지상 돌출물 및 시설물의 위치 및 형태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부지에 면하여 일부 확보되는 도로의 조성은 사업주체가 시행하고 추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며, 확보되는 도로의 면적은 사업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본 사업부지 북측 도로는 관계법령(건축법제2조제1항11호에 따른 4M도로)에 미달되는 도로로서 법령상 유효 폭(4M) 이상 확보를 위해 일부 필지에 한해 별도 기부채납(예정)되며, 법령상 도로 유효폭은 도로 반대편 대지를 포함하여 확보됩니다.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남측 및 동측 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대지면적의 일부가 기부채납 되며, 해당 기부채납 면적은 사업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대지의 서측에 도로 신설을 위하여 대지면적의 일부가 기부채납 되며, 해당 기부채납 면적은 사업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본 사업부지는 서측에 신설되는 4M도로는 조성후 별도 기부채납(예정) 됩니다. • 본 사업부지의 일부는 기부채납(예정)되며, 해당 기부채납 면적은 사업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주변환경	단지 주변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의 주변 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폭:약 8~10m) 도로는 기부채납에 의해 확보된 차도가 설치됩니다. • 단지 서측(폭:약 4m) 도로는 기부채납에 의해 확보된 보차혼용도로가 설치됩니다. • 단지 남측(폭:약 8m) 도로는 기부채납에 의해 신설된 차도가 설치됩니다. • 단지 북측(폭:약 4m) 도로는 차도가 기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 동측 및 남측 도로에는 보행자안전을 위하여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약 2m)가 설치되며, 대지소유권은 입주자에게 있으나, 관리주체는 지자체로 이관되며 그에 따른 지상권설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동측 및 남측에 설치되는 공공보행통로는 입주자 및 일반인이 사용하는 공공시설물로 임의로 출입 및 보행을 차단하는 시설(울타리, 보도 폐쇄 등) 설치 및 훼손 등 공공보행통로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시 사업계획승인 조건 불이행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취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 도로는 단지와 도로간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출입이 불가하거나 별도 출입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북측 도로는 높이 최대 약 5 m 차이의 경사가 있으며, 단지보다 높이 위치하여 위화감 등 불편함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매연, 실내 노출 등으로 인하여 환경성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주차구획, 주차 진출입구, 자전거주차장 등은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를 의하여 결정 된 사항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동측 도로에는 공동주택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며, 남측 도로에는 근린생활시설 차량출입구가 설치됩니다. • 단지 서측 도로의 차량 교행을 위하여 도로에 연결하여 대기차로(길이 약 18m, 폭 약 2m)가 단지 내 설치되며, 그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비용은 전체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개발에 따라 단지를 관통하는 기존 도로의 용도폐지로 인하여 인근 거주민들의 이동권이 제약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조건 상 동측 및 서측의 기존 도로와 연결하여 단지내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보행자 통로를 통하여 인근 거주민들이 단지를 통하여 이동할 수 있으며 출입을 차단하거나 차단하는 시설(울타리, 담장, 출입문 설치 및 잠금, 출입구 패쇄 등) 등 보행자 통로의 이용을 방해 또는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시 사업계획승인 조건 불이행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취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접 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서측 4m도로 맞은편에는 약5층 이하 규모의 상가, 빌라, 주택 등이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조망 등의 환경성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 인근에 산이 위치하여 소음, 냄새, 해충피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에는 약 8층 이하의 오피스텔 건물과 상가 및 오피스 건물이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조망 등의 환경성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북측과 서측, 동측 일부는 단지과 도로 및 인접대지 간 레벨차이로 인한 경사면, 석축 또는 옹벽이 설치됩니다. •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본 단지과 주변도로 및 인접대지간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옹벽, 화단 등의 구간 및 높이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과 대지와의 레벨 관계에 의하여 일부 출입구 부분에 계단 및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니 계약시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설치되는 운동시설, 광장,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조경 등 시설물에 인접한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시설물 및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소음발생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조경 식재 부분과 인접한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해충침입, 악취발생, 환기, 채광 및 조망 불량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과 제연을 위한 시설물(DRY AREA, 배기구 등)과 재활용품보관소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및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악취, 조명 등에 의해 사생활권 및 환경권과 조망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 상부의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간섭 및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와 필로티 상부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옥탑층 및 측벽에는 의장용 구조물, 태양광 구조물, 안테나, 이동통신중계기, 피뢰침, 경관조명 및 시행자 또는 시공사 BI 사인물 등이 설치되거나 또는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 또는 최상층 세대는 소음, 눈부심, 환경적 영향 및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비용은 전체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환경디자인 개선을 위해 주동 및 공용부 입면 일부 구간에 재료(유리 포함)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및 설계상 일부 시각적 간섭 및 공용시설 조명에 의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시공여건 고려 혹은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색상, 옥상장식물,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디자인,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문주, DA, 옹벽 등), 조경디자인(식재계획, 조경 바닥 디자인 등), 단지 사인 및 조명(단지 BI사인물 포함), 주차장 구조체 공법(DECK PLATE 등) 등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공법 등이 부위별로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일부 입주자의 개인 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주동 저층부(3층 이하) 외벽은 석재뿔칠이 적용되며, 지하주차장 외부 벽면, DA 등 외부시설물,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부위는 별도 지정도장 마감이 적용됩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디자인, 위치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 동측에 주출입구 1개소(보행자 및 차량 공용), 단지 출입구가 설치되며, 단지 특성상 공동주택 입주자만 사용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상주차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 보행자 및 차량 공용 출입구의 보행로와 차도 간 경계부에는 차량 진입 방지 및 안전을 위한 블라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보행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지상의 도로(차도, 보도)는 긴급 및 서비스(이삿짐, 소방차량, 쓰레기차량 등) 차량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도로(보도 및 차도)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비상시 소방차 정차 공간이 설치되며, 위치 이동 및 제거할 수 없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자체 협의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현황도로가 없어짐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보행편의를 위한 단지내 보행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동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출입구(필로티 포함)(추가)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폭, 높이)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 동 출입구의 입접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 인근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입주민의 통행, 현관 조명, 단지 내 조명 등으로 인하여 소음, 눈부심, 환경적 영향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동 지상1층 3호 및 6호, 102동 2호 및 4호 라인에는 1개층 필로티가 설치됩니다. • 필로티는 해당 동의 출입구 및 자전거 보관소, 경비실 및 근로자 휴게실(101동에 한함)로 이용되며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보관소는 지상에 공동주택 필로티 하부에 동별 40대씩 총 80대 설치되며, 공동주택 입주자 및 근린생활시설 입점자 및 이용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무인 택배 보관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택배보관소는 동별 지하1층 1개소(총 2 개소) 설치하며 택배함 수량은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로 설치됩니다.
재활용품보관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품보관소는 101동 후면 및 부대시설 측면에 1개소, 102동 후면에 1개소, 근린생활시설 측면에 1개소 총 3개소가 1개소가 설치되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해 RFID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품 보관소 이용에 관련하여 필요시 입주 후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간의 협의에 따라 사용 방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의 계단실의 형태는 전용면적이 동일하더라도 동 형태에 따라 설비PD,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의 형태 및 면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해당 동에 따라 각각 다르고, 외부에 면하는 창에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수동으로 개폐시 사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계단별 1대로(층당 2세대 포함) 계획되어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모형 및 도서를 통하여 엘리베이터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물건을 적치하거나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는 지상1층 및 지하1~2층에 공동주택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상1층에 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지하주차장 사용구획 및 주차대수가 변경 될 수 있으니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사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공동주택은 주출입구를 통과하여 지상 및 지하층 주차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은 외부주차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주차장 이용에 제한을 주거나 개별적인 소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법정대수인 371대로 세대당 2.11대를 계획하였습니다. • 공동주택 주차대수 중 조례 규정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여성우선주차구획이 39대(전체 약 10.51%)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구획을 임의로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 통합형이며, 지하층 특성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평면 계획에 따라 주차대수의 배분은 주동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일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 등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 또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에 계획된 창고는 주차장에 부속된 공용창고로 입주인 창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공용부 통로 공간, 계단실은 비난방·비단열공간으로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유효높이 확보를 위하여 일부 기둥, 보와 같은 구조체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진입램프 및 지하주차장에는 높이 2.7m 차량은 지하1층에만 진출입이 가능하며, 높이 2.3m 미만의 차량은 전 층 출입이 가능 하오니 이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주차공간은 높이 2.1m 미만의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며, 일부구간은 건축물의 구조 및 기계, 전기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천정고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 또는 옥탑에 태양광 구조물, 위성 안테나, 이동통신중계기,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또는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는 전문업체의 검토를 통해 적절한 위치에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환경적 영향과 소음발생,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 지하2층에 인접하여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등이 위치, 102동 지하2층에 인접하여 정화조가 위치하여 장비 등의 운용에 의해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및 지상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제연실 포함) 및 정화조, 제연 및 환기용 DA탑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상주차장에 3개소(완속) 설치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지하층의 경우 공기 미순환 등으로 인해, E/V홀 내부 및 지하층으로 연결된 계단실, 지하주차장 외벽 및 구조물 등에 결로 및 습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공동주택 필로티공간 및 재활용품보관소 인근, 남측 및 동측 도로변 조경공간 인근에 지하주차장 및 기계/전기실 등의 환기 및 제연을 위한 DA(환기탑)이 설치되며, 인접한 시설물 또는 인접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 풍압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조경식재, 야간조명, 홈네트워킹 등 단지 내 공용설비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 규약에 따릅니다.
이사시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시 단지 내 보차도 바닥 마감, 조경, 세대의 층수, 창호형태 및 크기, 평면 형태, 입면 장식, 돌출발코니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의 제원에 따라 운반 가능한 이삿짐의 크기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대 복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부대복리시설)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시설이며, 용도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등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주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내 부대시설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재활용품 보관소, 자전거 보관대, 통학차량 정차공간 등이 계획되었으며, 복리시설은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회의실, 다목적실, 게스트하우스 등이 설치되며, 일체의 운영 및 보안, 유지 관리는 입주인 자치적으로 하여야합니다. • 복리시설 중 경로당, 주민회의실,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등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위한 입주인공동시설로써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간 협의에 따라 타용도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이용에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기타 시설물의 설치로 인접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일조, 조망, 소음, 진동, 눈부심, 냄새, 해충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냉방 실외기, 환기시설 등은 해당시설 외부 또는 외기를 향하여 설치되며, 인접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피트니스센터는 지하1층 주민운동시설에 계획되어 있으며, 세대별 및 동별 위치 및 용도에 따른 거리에 따라 접근동선이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경로당 및 주민회의실은 주민공동시설 지상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세대별 및 동별 위치 및 용도에 따른 거리에 따라 접근동선이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다목적실은 주민공동시설 지상2층 계획되어 있으며, 세대별 및 동별 위치 및 용도에 따른 거리에 따른 접근동선이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는 지상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세대별 및 동별 위치 및 용도에 따른 거리에 따라 접근동선이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피트니스센터, 주민회의실 등의 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에서 시공하며, 가구 및 가전, 소모집기 및 비품은 별도 제공되지 않으므로 입주 후 입주인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합니다. • 어린이 놀이터는 102동 인근 지상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세대별 및 동별 위치 및 용도에 따른 거리에 따라 접근동선이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 통학차량 정차공간은 101동과 주민공동시설 인근에 설치되며, 인접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 해충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통학차량 정차공간은 어린이들의 통학차량 이용시 승하차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계획되었으며, 이용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시기 바라며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은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 재활용품보관소는 주민공동시설 동측, 102동 북측에 설치되며, 인접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 해충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단지 내 녹지공간에 설치될 예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으로 대체되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설치 또는 미설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린 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지상1층)은 101동과 102동 사이 남측에 설치되며, 시설 이용자 및 입점업종에 따른 조명, 소음,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하여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인접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일조, 조망, 소음, 진동, 냄새, 해충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위세대	마감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 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천장의 올림공간(우물천정)의 천정고는 천장 내부의 해당 세대 및 상부층 세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다소 축소 또는 확대 되어 시공 되어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해당 세대 및 상부층 세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다소 축소 또는 확대 되어 시공 되어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화장실(샤워부스 포함),현관 등의 단차 및 타일 줄눈의 모양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내부마감재(마루재, 타일, 도배지, 시트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 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 발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손잡이 개폐방식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구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방가구 및 신발장, 붙박이장 등의 가구 뒷면 및 바닥, 천정에는 바닥마감재 및 벽지, 천정지 등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 약세서리, 힌지 등의 가구철물은 제품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의 아트월 설치 및 복도 등의 벽체의 마감 두께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길이는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의 마감은 설치 후 시간경과에 따라 노후화가 발생되며, 자외선 및 각종 세제, 화학약품 등에 의해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공간계획은 일반적인 사이즈로 계획하였으나 규격 등의 차이로 인해 돌출 되거나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반드시 실제 크기를 확인해야합니다. • 세대 내 주방의 기본사양 가전류 외 고용량 가전제품(전기인덕션 등)의 추가 설치의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 관련 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상부 덕트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조명기구 위치변경은 불가하며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의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가스미터기 설치 위치에 따라서 선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는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른 추가 단열공사 시 비확장 세대측에 우선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며, 이로 인하여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및 실내 공간 등 일부 구간의 바닥, 벽체, 천장 일부가 돌출, 단차, 높이 및 폭 축소, 결로 등이 발생되거나 발생할 수 있어 내부 공간 축소 등 사용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의 발코니에는 투시형 난간이 설치됩니다. • 공동주택 발코니 내 세탁기 설치 등으로 인한 단차 발생구간은 낙상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내 또는 공용공간에 설치되는 완강기, 대피공간은 관련 법규에 따라 화재 발생시 대피 및 소화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또는 공간으로 일상생활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주 후 임의 훼손, 변경 및 제거, 물건적재 및 기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련 법규 위반시 입주자가 원상복구 등을 하여야 하고 별도의 과태료나 처벌 등 법적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4 ~10층(동별 및 세대 호실별 설치 유무 및 층수와 위치는 변경 또는 상이할 수 있음) 세대별로 대피공간 등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완강기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설치공간의 사용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완강기가 설치되는 부분의 하부에는 피난을 위한 발판(벽부 고정형 접이식 발판 또는 발판 경용 완강기함)이 설치 또는 비치될 수 있으며, 향후 입주 후 개별적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일부 발코니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대피공간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발코니의 사용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비상시 대피공간의 창호를 통해 외부로 소방 사다리차 등을 이용하여 피난하는 공간으로 입주 후 임의 훼손, 변경 및 제거, 물건적재 및 기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 24층~25층 180㎡타입 대피공간에는 피난을 고려해 완강기를 추가 설치, 23층 옥상지붕에는 인접지붕으로 피난을 고려해 고정식철재사다리가 설치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외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어컨 실외기 사이즈에 따라 실외기실 내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외부에 별도 설치가 불가하오니 구매 전 해당 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에어컨 작동 시 방충망을 닫고 사용 하는 경우에는, 냉방 성능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에어컨 작동 시 그릴창의 그릴을 개방하여 사용해야 하며, 폐쇄한 상태로 작동 시 냉방성능 저하, 고장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보일러와 수전 및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창문 또는 그릴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창호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내 설치되는 창호, 유리 및 손잡이의 형태, 열림 방향, 색상, 제조사 등은 본 공사 시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창 프레임 및 날개 등은 금속성 재질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므로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가 아니며 입주자가 관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철재문 및 방화문류의 설치 위치, 크기, 형태, 디테일은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실별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옥외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부층과의 바닥면적차이로 인하여 상부층세대 전면에 형성되는 옥상 외부공간은 공용공간으로써 계약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공간으로 임의 출입이 불가 및 사용이 불가하며, 유지관리를 위하여 세대를 통하여 관리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되어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외부공간에는 동파발생 등에 따라 별도 수전을 설치하지 않으며, 입주 후 임의로 수전을 설치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하자보수는 입주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외부공간은 본 공사 시 건축평면 및 입면형태에 따라 해당 외부공간의 형태가 변경되거나 바닥의 단차, 난간, 배수처리 방법은 본 공사 시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외부공간은 외측에 직접 노출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으며, 그에 따른 안전을 위하여 철재 난간이 설치되며, 추락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설비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동주택은 개별난방입니다. • 실외기실에는 보일러, 전열교환기, 실외기 등이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설치위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 등에 전열교환기 덕트, 스프링클러 배관, 드렌처설비 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임의로 철거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실외기실, 세탁실 포함)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사양,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p>공간으로 계획 되었으며, 물 사용시 배수가 불가하거나, 하부층으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80Ptype 발코니, 195Ptype 발코니 2, 3번: 수전 및 드레인 미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세대 상부에 발코니 및 테라스 등이 설치되는 경우 상부층 발코니의 배수 및 우수 배관이 천장 또는 천장속에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배수용 선출통은 발코니, 실외기실 또는 PD내에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환기시스템은 건본주택에 설치된 전열교환장치 또는 동등이상의 사양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 및 사양,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 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 실별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창호 및 외기노출벽면 마감재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 내 손빨래수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정화조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이 공용으로 사용되며, 정화조의 설치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층 및 지하주차장 및 PD 또는 ST 등에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용 정화조 배기덕트가 통합하여 설치됩니다. 배기덕트의 설치위치에 따라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주방 및 욕실 내 배기는 직접배기방식으로 설치되며, 그로인해 일부 발코니 및 실외기실 등에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전기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습니다. • 건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전기기구(홈네트워크,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등) 설치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전기분전반/통신단자함의 설치 위치 및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방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홈IoT	<p>본 단지는 LG전자 홈IoT를 제공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T서비스는 입주자와 LG전자와의 계약관계이며 시공사는 기본 인프라만 제공하는 것으로 IoT서비스에 대한 내용 및 기술지원은 IoT서비스 제공업체(LG전자)에 확인바랍니다. • LG전자의 IoT서비스(LG ThinQ 우리단지 서비스)는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 후 서비스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과금 예정입니다. • IoT서비스(LG ThinQ 우리단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반드시 세대내 무선인터넷(Wi-Fi AP) 설치하여야 하고(통신사무관),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LG전자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LG전자 제공)에서 세대내 설치된 조명, 난방, 가스밸브 제어가 가능하며, IoT 호환이 되는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스마트 가전제품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LG전자 IoT와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함] • IoT서비스(LG ThinQ 우리단지 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LG전자의 사업정책에 따라 3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LG전자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유상옵션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및 선택제에 따라 설치되는 등기구의 위치 및 콘센트, 스위치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X 기타 계약자 안내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단위: 원, VAT별도)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 매수자는 본 건축물이 매도인 경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시공사인 에스지씨이테크건설(주) 및 위탁자 경 수익자인 (주)퍼스트에버개발 간에 2022년 03월 31일 책임준공 분양형(혼합형) 토지신탁계약

구분	건축	전기,소방 및 정보통신
회사명	(주)도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1,075,600,000원	660,000,000원

(이하 "신약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여 진행되는 책임준공 분양형(혼합형) 토지신탁사업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본 특약사항의 내용이 분양 계약의 다른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인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주식회사 퍼스트에버개발)와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체결한 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분양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주식회사 퍼스트에버개발)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된다. • 매수인은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한다. • 매수인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사인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 에게 있으며 시공사 교체사유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건축물 브랜드·명칭 변경 포함) 교체시 매수인은 사전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분양계약 목적물은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겸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 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하자보수책임 등 시공사의 의무는 시공사 에스지씨이테크건설(주)에게, 분양계약 해제(해지)시 분양대금 반환 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주식회사 퍼스트에버개발에게 있다. • 매수인은 분양대금을 받드시 분양 계약서에서 명시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분양대금수납계좌에 직접 입금하여야하며, 동 계좌로 입금(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 방식)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유효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형식적인 시행사로서 사업주체(건축주) 및 분양권자로서의 의무나 책임은 주식회사 퍼스트에버개발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이의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정책(중도금대출 제한비율 강화, 담보대출 제한 등), 금융기관 미확보 등에 따라 중도금대출, 담보대출이 제한(축소)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축소), 대출불가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분양대금을 자기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주체(건축주)로서의 일체의 의무와 책임 및 분양광고 등 분양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의무와 책임은 주식회사 퍼스트에버개발이 부담하며,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은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입은 손해 및 손실의 배상을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위탁자 주식회사 퍼스트에버개발 및/또는 분양대행사(소속 임직원 포함)는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승인없이 단독으로 또는 매수자(수분양자)와 합의하여 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본 분양계약의 내용·효력을 변경하거나 상실시키는 행위, 매수자(수분양자)의 분양대금·연체료·위약금 채무 등을 감면하는 행위, 매수자(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 등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 매수자(수분양자)에게 본 분양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본 분양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약속·확약하는 행위 등 일체를 할 수 없으며, 본 분양계약상 수탁자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수탁자를 대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한하여 수탁자를 대신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수자(수분양자)가 본 분양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지체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매수자(수분양자)에 대한 이행최고 또는 위반사항 시정촉구 통지 2. 매수자(수분양자)에 대한 본 분양목적물의 입주지정일(또는 입주지정기간) 통지
--

■ 본 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득한 주택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기관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92022-101-0010300	주택도시보증공사	83,487,88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을 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충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충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홍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본 주택의 하자보수담보 책임 및 하자보수책임은 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적용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자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위탁사	시행수탁사	시공사
상호	주식회사 퍼스트에버개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
주소	강원도 강릉시 경포로 15번길 6-1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3~6층, 13층(송암빌딩)
법인등록번호	141111-0067823	110111-1348237	110111-0327555

- 견본주택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지변동 360-6번지
- 분양 홈페이지 : <http://강릉더리브퍼스티지.com>
- 분양 문의 : ☎1600-1311

- ※ 청약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